



#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?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

##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

- ▶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) 의료기관, 약국, 대중교통수단(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)

## OX로 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

지하철역,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	지하철, 기차, 버스 안	전세버스, 통근버스,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	쇼핑몰	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	직장	카페, 식당
×	○	○	×	○	×	×

※ 직장과 카페, 식당의 경우,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

##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

- ▶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
\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▶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
\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▶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- ▶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▶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,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